

의안번호	제463호
의결 연월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
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동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1월 16일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동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16일
발의자 : 이동우, 김종필, 김호경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·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확대(안 제4조)
 - (기존) 3년 → (개정) 5년
- 나.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다. 도지사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3년” 을 “5년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) 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
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자동차관리법

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“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7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⑤ ~ ⑫ (생략)

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~ 12. (생략)

13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

14. ~ 35. (생략)

④ (생략)